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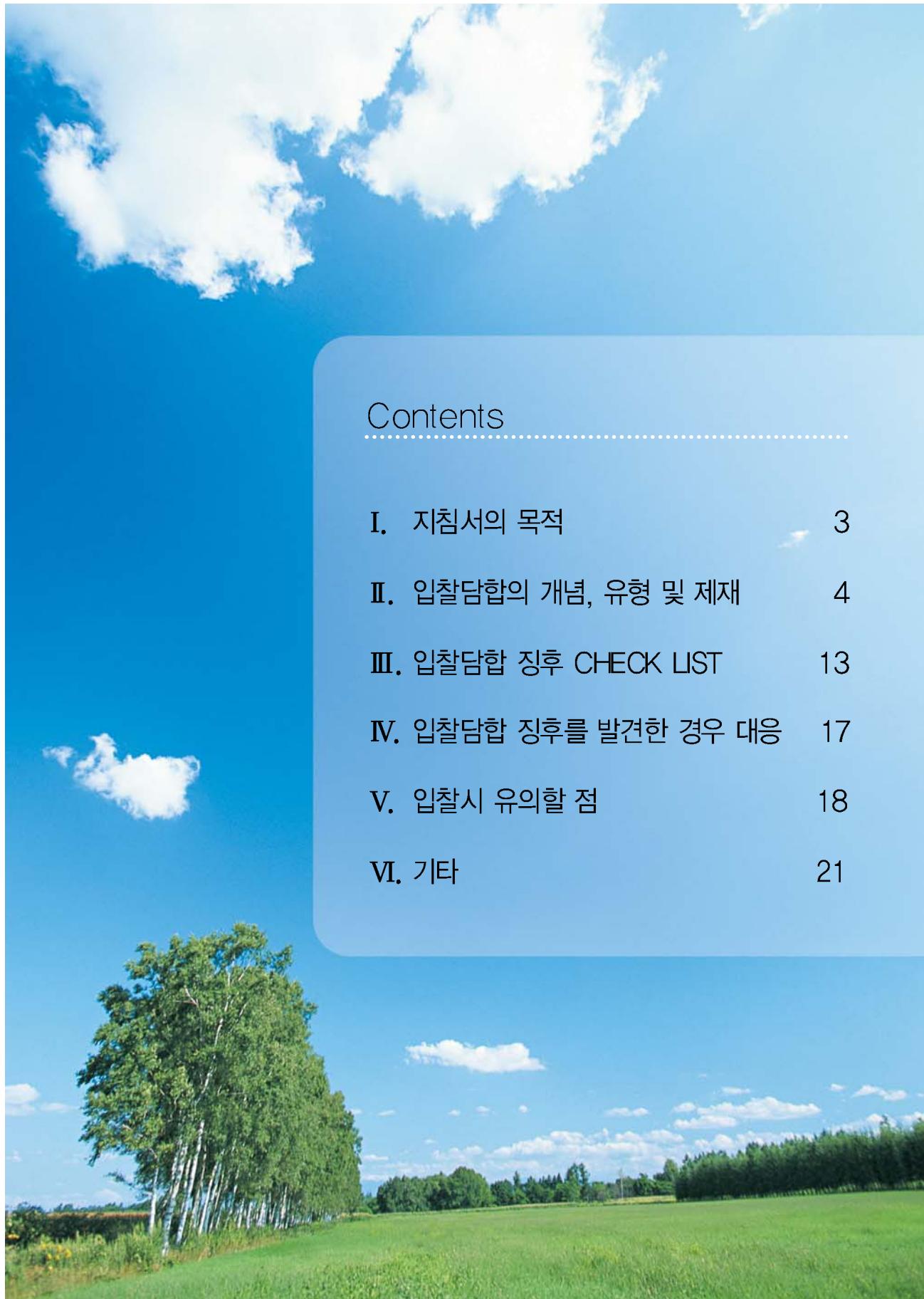
입찰담합 방지 지침서

조달 담당자를 위한

2008



공정거래위원회



Contents

I. 지침서의 목적	3
II. 입찰담합의 개념, 유형 및 제재	4
III. 입찰담합 징후 CHECK LIST	13
IV. 입찰담합 징후를 발견한 경우 대응	17
V. 입찰시 유의할 점	18
VI. 기타	21

I. 지침서의 목적

-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**입찰담합을 근절**하기 위하여 조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
- » 경쟁자들이 담합하는 경우에는 경쟁질서 교란, 낙찰률 상승에 따른 정부예산 과다 지출,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, 궁극적으로 국민의 손해로 귀결됨
- »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, 입찰을 직접 주관하는 조달기관의 협조가 있는 경우 입찰 담합을 적발 · 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됨

II. 입찰담합의 개념, 유형 및 제재

1. 입찰담합이란?

- 입찰담합이란 물품구매 또는 건설공사 등의 **입찰 또는 경매에서**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**투찰가격, 낙찰자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**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

» 입찰담합은 카르텔 유형 중에서도 노골적(naked)인 경성카르텔 (hard core cartel)로 분류되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위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<공동행위 심사기준 III. 1. 가. (1)>

- 입찰담합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)에 의해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임<법 제19조 ① 8호>

2. 입찰담합의 유형

- 아래 기재한 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찰 담합에 해당할 수 있음

입찰가격담합

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

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

수주물량 등의 결정

경영간섭 등

입찰가격담합

-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**입찰가격을 결정·유지·변경**하는 행위

- » 사업자가 공동으로 **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**
- » 사업자간에 **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·제공**하는 행위
- »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**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** 입찰하는 행위
- » 사업자가 공동으로 **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** 예정 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**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** 행위
- » **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**

※ 사업자가 **독자적으로**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**수집하는 영업활동 행위는 허용됨**

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

●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그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행위

.....

- »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
- »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 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
- »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는 행위
- »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
- »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
- »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,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

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

-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· 유도하는 행위
-

- »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
- »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둘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
- »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



수주물량 등의 결정

●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**수주물량 결정**과 이러한 수주 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**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**하는 행위

.....

- »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**수주물량을 결정**하거나 입찰 참가자간 **수주물량배분을 결정**하는 행위
- »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**입찰참가를 방해**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
- » **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**하는 행위

※ 다만 관련 **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**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수주하는 경우는 허용됨

경영간섭 등

-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의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
 - »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**판매물량의 제한**이나 기타 **불리한 조건**에 의해 **판매**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
 - »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**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**하거나 **수주예정자** 결정을 위하여 **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**하도록 요청하는 행위
 - »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**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** 조건이나 **특정사업자로 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**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
 - »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**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**토록 하거나 **특별회비로 납부**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



3. 제재

시정조치

- 당해행위의 중지, 법위반사실의 공표, 기타 필요한 조치

»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 단체가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(또는 사업자단체)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, 법위반사실의 공표,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<법 제21조, 제27조>

※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발주 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<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>

과징금

- 입찰담합행위 : 담합한 사업자에 대하여 **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**(매출액이 없는 경우 **20억원**) 범위 내 <법 제22조>

»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함 <법 제9조>

- 사업자단체의 행위 : 사업자단체는 **5억원**, 참가사업자는 **관련매출액의 100분의 5**(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) 범위 내 <법 제28조>

※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

-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(법 제22조의2)

»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자진신고자로서, 관련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성실하게 협조할 것,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, 다른 사업자에게 공동행위 참여 또는 참여중단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을 요함(법 시행령 제35조)

형벌

- 입찰담합 행위를 한 자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징역과 벌금은 병과(並科) 가능)(법 제66조)

» 다만,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음

손해배상청구

-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(법 제56조, 민법 제750조)

»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제재는 아니고 민사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찰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임

III. 입찰담합 징후 CHECK LIST

1. 입찰가격 관련

- ✓ 동일 물자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장기간 동안 낙찰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
- ✓ 비용인상 유발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인상된 경우
- ✓ 전통적으로 할인가격이 존재했던 시장에서 할인가격이 사라진 경우
- ✓ 근거리에서 제품을 싣는 입찰자들이 원거리에서 싣는 입찰자들과 같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
 - 가격담합이 없다면 원거리 판매자들은 운송비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
- ✓ 지역 경쟁자들이 원거리보다 지역 내 운송료를 더 높게 입찰한 경우
- ✓ 새로운 입찰자 또는 가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나타날 때마다 다른 기업들의 입찰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
- ✓ 입찰시 제출한 가격과 입찰자들이 공개한 가격이 불일치하는 경우
- ✓ 입찰자가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
- ✓ 재입찰에서 원래 입찰과 동일한 입찰순위가 나오는 경우
- ✓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같은 품목에 대해 다른 가격을 제시한 경우
- ✓ 둘 이상의 업체가 한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입찰가를 제시한 경우
- ✓ 특정지역 연고의 입찰자들이 다른 지역의 발주자에게 보다 같은 지역의 발주자에게 높은 입찰가로 응찰하는 경우

2. 낙찰결과 관련

- ✓ 특정 업체가 특정 조달사업이나 특정지역에서 항상 낙찰을 받는 경우
- ✓ 낙찰가격과 다른 입찰가격 간의 격차가 이유없이 큰 경우
- ✓ 일부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낙찰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- ✓ 동일한 참가업체 군이 매번 입찰에 참가하여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
- ✓ 특정 업체들이 반복해서 함께 입찰에 참가하거나, 특정업체들끼리는 절대로 함께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
- ✓ 일부 업체들이 예정가격이나 자신들이 종전에 제시했던 가격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- ✓ 특정 물품에 대한 비용이 종전의 소요비용이나 유사품목의 비용에 비해 크게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달에 대한 입찰가격을 상당히 높게 제시하는 경우
- ✓ 낙찰업체가 동일한 입찰에 높은 가격을 제출한 회사들과 반복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✓ 낙찰업체가 입찰참가서류는 가져갔지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 또는 입찰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✓ 각 입찰자들이 몇 년에 걸쳐 전체사업의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
- ✓ 서로 다른 업체들의 무리가 서로 다른 지역에 배타적으로 몰려있는 경우

3. 입찰자들의 행태 관련

- ✓ 서로 다른 입찰자들이 제출한 입찰서류들이 서로 유사한 경우
 - 동일한 계산상·표기상 오류 등이 있는 경우
- ✓ 서류제출 직전에 입찰가격을 수정한 것으로 추측되는 징표들이 서류에서 발견되는 경우
- ✓ 입찰자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정도로 가격을 빈번하게 수정하는 경우
- ✓ 특정 입찰자가 자신과 다른 경쟁자의 입찰 관련서류들을 한꺼번에 요청하여 일괄 제출하는 경우
- ✓ 개별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또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입찰 하는 경우
- ✓ 경쟁 사업자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갖거나, 입찰서류 제출 마감 직전에 발주기관 근처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
- ✓ 경쟁 사업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조달기관 직원과 입찰서류에 대해 논의·검토하는 경우
- ✓ 경쟁자들이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경우
- ✓업체가 당해 조달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에도 입찰참가를 하는 경우

4. 진술과 관련

공급회사 마케팅 담당자나 판매촉진물 등에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있는 경우

- ✓ 협회가격표, 산업가격표, 산업제시 가격, 전산업적 또는 전시장적 가격에 대한 언급
- ✓ 산업 또는 산업 선도자의 가격 또는 조건을 따랐다는 진술
- ✓ 산업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을 따랐다는 등 산업 자율규제 등에 대한 언급
- ✓ 특정기업이 어떤 이유에서건 경쟁자들을 만나왔다는 언급
- ✓ 공급자들이 원하거나, 경쟁자들이 같은 것을 원하거나, 모두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정당화하는 것
- ✓ 특정 회사는 그 지역에서는 팔지 않는다거나 특정 회사만 그 지역에서 팔거나 또는 그 사업을 취급한다는 언급
- ✓ 특정 업체가 어떤 계약을 따낼 “순서”라는 언급
- ✓ 입찰자가 다른 공급업체들을 도와서 입찰을 한다는 등의 언급
- ✓ 경쟁업체들이 입찰에 대해 논의하였다거나 입찰에 대한 거래나 양해가 있다는 언급
- ✓ 이번 입찰이 특정 경쟁자를 위한 것이라거나, 자신은 의례적으로 입찰한 것이라거나, 입찰자들 간에 가격에 관한 논의를 한 듯한 언급

IV. 입찰담합 징후를 발견한 경우 대응

●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였을 경우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

- » 입찰분석결과, 경쟁자의 신고, 전(前)직원 등 관계자의 제보 등을 통해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였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하여 다음 사항에 관해 의사를 교환할 것
 - (a)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지, (b)정식 조사가 착수되어야 하는지, (c)관련행위가 경쟁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등
- » 아울러 잠재적인 입찰담합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조달기관의 담당 직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 간의 비공식적 접촉이 필요

● 절저한 보안유지

- » 카르텔은 은밀히 행해지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움
 - 그런데 사전에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경우 관련 자료를 은폐·폐기하여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, 담합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됨
 - 입찰담합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입찰참가자들도 그 신고사실을 절대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필요 있음

V. 입찰시 유의할 점

● 잠재적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넓힐 것

- »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수가 많을수록 담합이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고, 결국 담합의 발생이 줄어듦

●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컨소시엄 공고를 피할 것

- » 입찰공고시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당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들 간의 컨소시엄은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음
- 왜냐하면 단독으로도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경쟁으로 인해 낙찰을 받지 못하거나, 저가로 낙찰받는 것을 우려하여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음

● 장래 하도급계약자와 하도급계약 가격에 관한 정보요구

- »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경쟁을 피하고, 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로 하고, 일부는 낙찰 받은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음
-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등한 업체들간의 하도급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 있음

● 입찰담합관련 서약서 징구하고 계약서에 첨부할 것

- » 입찰서류를 제출받을 때 입찰자들간의 의사연락 내지 입찰담합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, 입찰담합 사실 발견시 당해 입찰 무효, 계약해제 · 해지,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, 손해배상 청구,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,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고, 계약서에 첨부할 것〈별지서식 1호 참고〉

● 가능한 한 대체상품을 허용

- » 정부 시방서(示方書)의 내용이 오직 하나 또는 제한된 수의 잠재적 입찰자들만 충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로 입찰참가자가 제한되어 담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
 - 따라서 특정한 상품보다는 특정한 성능에 초점을 맞춰 대체상품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 있음

● 구매계약을 통합할 것

- » 구매계약을 통합하면 계약 성사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, 담합에 참가하였더라도 합의를 깨려는 유인이 커짐
 - 작은 계약을 10번 하는 것 보다 이를 합쳐서 큰 계약을 1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

● 시장가격을 파악할 것

- » 공급자 군(群)에 대한 정보 및 시장가격 사전 숙지
- » 타 지역에서의 시장가격 파악

● 입찰참가자 명단을 비공개할 것

- » 입찰참가자의 명단을 공개하면 경쟁자들이 누구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비공개할 것

●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것

- » 예정가격을 공개하면 입찰자들이 이 가격을 입찰가의 하한선으로 사용할 유인이 크므로 공개하지 말 것

● 예측가능한 상황을 피할 것

- » 다음에 어떤 입찰이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합을 하기에 용이하므로 예측가능한 상황을 피할 필요 있음



VI. 기타

1. 자료 보관, 정리 및 분석

조달입찰 자료를 보관(최소 5년간)

- »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이름, 주소, 제출한 서류, 발주기관의 예정가격, 입찰서류를 제출한 직원의 이름, 건설업체들 혹은 임원들 사이의 회합, 제휴정보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할 필요 있음
- » 특히 시장분할(allocation)이나 돌려먹기(rotation)와 같은 패턴이 있을 경우 과거의 입찰 기록이 없이 한번의 계약만으로 알아내기는 힘듦
 - 자료수집 양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들을 편집하고, 가능하다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좋음

의심스런 산업에서는 그 동안의 입찰내력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

- » 주요 업체들과 그 업체들이 5년간 따낸 계약의 수, 계약금액, 전체 계약금액, 각 업체들이 따낸 계약금액의 비율, 업체들의 순위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경쟁메트릭스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

2. 조달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포상

●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입찰담합관련 교육 실시

» 조달기관 직원들에 대하여 입찰담합 방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입찰담합의 개념, 징후, 탐지한 경우 처리방법을 숙지시킬 필요 있음

● 입찰담합 적발 및 제재에 기여한 직원 포상

» 조달기관은 입찰담합을 탐지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 당국의 처벌에 기여한 직원들을 포상

3. 담합한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 제기

● 담합으로 인해 조달기관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, 아울러 담합한 업체와 잠재적 담합 업체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필요 있음

※ 방위사업청은 '98-'00년 동안 군납유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, 투찰가, 투찰물량 등을 담합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810억원 배상판결을 받음(서울중앙지법 '07.1.23. 선고 2001가합10682)

별지1호(예시)

서 약 서

년 월 일

○○○○長(예, 조달청장) 귀하

회사명 (인)

대표자명 (인)

담당자명 (인)

이번 ○○○○공사의 입찰에 관해, 경쟁자들과 (a)가격, (b)가격산정 방법, 요소, 공식, (c)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지 여부 (d)낙찰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, (e)수주물량, (f)물품 또는 서비스의 질, 사양 등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· 연락 · 합의 ·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, 이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또한 저희 회사가 제시하는 입찰의 조건들에 대해 입찰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경쟁자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.

만약,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, 입찰무효, 계약해제 · 해지, 공사중지, 손해배상청구, 입찰참가자격제한,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지,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없습니다.

만약,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, 즉시 귀 기관에 알리겠습니다.

별지2호(예시)

년 월 일

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
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장 귀하

○○○○장

담합정보 등 관계자료 송부

○○○○(예: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)소관의 ○○○○공사의
입찰과 관련된 담합정보에 관한 자료를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.

별첨 : 담합정보보고서(사본)

별지3호(예시)

담합정보보고서

년 월 일

정보수령일시	년 월 일() 시 분
공사명	
공사발주기관	
공사주관과	
입찰(예정)일	년 월 일() 시 분
정보제공자	직책 : 성명 :
정보수령자	소속 : 직책 및 성명 :
정보수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전화• FAX• 우편• 전자우편(E-MAIL)• 서면• 면담• 보도• 기타
정보내용	

별지4호(예시)

년 월 일

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
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장 귀하

○○○○장

담합정보 등에 관한 자료 추가 송부

○년○월○일에 송부했던 담합정보 등에 대해, 그 후의 조사결과를
별첨과 같이 추가로 송부합니다.

- 별첨 : 1. 서약서
 2. 입찰조서
 3. 그 외 관련 자료



Korea Fair Trade
Commission

입찰담합징후를 인지한 경우
다음 기재한 곳으로 연락바랍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

- 과 장 : 02) 2023-4436
 - 총괄서기관 : 02) 2023-4446
 - 총괄사무관 : 02) 2023-4437
 - 이 메 일 : cartel@ftc.go.kr
 - F A X : 02) 2023-4444
 - 주 소 : 서울 서초구 반포4동(반포로 648) 공정거래위원회
-



공정거래위원회